

### [서식 예]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(지급명령으로 토지 및 건물)

# 부동산강제경매신청

채 권 자 ○○○(주민등록번호)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 전화·휴대폰번호: 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채 무 자 ◇◇◇(주민등록번호)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전화·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# 청 구 금 액

금 ○○○원 및 이에 대한 20○○. ○. ○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○○%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

# 집행권원의 표시

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○○지방법원 20○○차(전) ○○○호 임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

경매할 부동산의 표시

별지목록 기재와 같음.

## 신 청 취 지



- 1.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한다.
- 2. 채권자를 위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압류한다.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

### 신 청 이 유

- 1.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의한 금 ○○○원 및 이에 대한 이에 대한 20○○. ○. ○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○ ○%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.
- 2. 그런데 채무자는 위 채무를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.
- 3. 따라서 채권자는 위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채무자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.

## 첨 부 서 류

1.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 1통 1. 주민등록초본(채무자) 1통 1.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각 1통 1. 등록면허세 영수필통지서 (등기소·시군구청통보용), 등록면허세 영수필통지서 (등기소보관용) 각 1통 1. 법원보관금영수증 1통 1. 이해관계인목록 2통 1. 부동산목록 1통 1. 송달료납부서 1통

20 O O O O O (서명 또는 날인)

### ○○지방법위 귀중



[별 지]

#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

- 1.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-ㅇㅇ 임야 3273 m²
- 2.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○-○○
  [도로명주소] 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
  브럭조 스레트지붕 단층축사
  324㎡. 끝.



### [별 지]

## 이해관계인의 표시

1. 1번근저당권자 ●●은행

○ ○시 ○ ○ 구 ○ ○ 길 ○ ○ (우편번호) 대표자 은행장 ◎ ● ● (소관 ● ● 지점) 전화·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2. 2번근저당권자 ◆◆◆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 전화·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3. 3번근저당권자 ■■■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•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

제출법원	경매할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(민사집 행법 제79조제1항, 제 268조) 민사집행법 제80조
제출부수	신청서 1부(부동산목록 : 1통 제출)
불복절차 및 기간	(신청인)  · 신청기각·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(민사집행법 제83조제5항)  ·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(민사집행법 제15조제2항)  (이해관계인)  ·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에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(민사집행법 제86조제1항).
비 용	• 인지액: ○○○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) • 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 •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: 채권금액의 1,000분의 2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(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라목 1)) 및 등록 면허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(지방세법 제151 조제1항 제2호)납부 • 감정료, 신문공고료, 부동산현황조사료, 매각수수료를 예납하여야 함.
기 타	· 강제경매에 있어서 채권의 일부청구를 한 경우에 그 경매절차 개시를 한 후에는 청구금액의 확장은 허용되지 않고 그후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잔액의 청구를 하였다 하여도 민사집행법 제88조에 의한 배당요구의 효력밖에는 없음(대법원 1983. 10. 15.자 83마393 결정). ·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서 원리금의 기재가 있는데, 경매개시결정에는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채권자는 매각대금에서 원리금의 변제를 받을 수 있음(대법원 1968. 6. 3.자 68마378 결정). · 경매신청서에 원금 이외에 이자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매신청서에 이자채권에 관하여 표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채권계산서에 기재하면 그 부분에 관하여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으므로 배당받을 수 있음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집행 >> 강제집행